

〈일반논문〉

## 唐 初期 羈縻府州의 出現과 制度的 境界

정 병 준 \*

〈목차〉

- I. 머리말
- II. 당 초기의 '이민족 주현' 설치
- III. 동돌궐의 멸망과 기미부주 창설
- IV. 도호부의 설치와 제도적 경계
- V. 맺음말

[국문초록]

당 초기에 이민족이 투항해 오면 주현을 설치하여 관리하였으며 그 중에는 각 추장을 자사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부역을 비롯한 제도적 측면에서 이들은 正州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동일하였을 것이다.

기미주는 630년 동돌궐이 멸망하면서 발생한 대량의 유민을 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창설은 이전의 '內民化' 정책을 바꾼 것으로 전통적 이민족 관리 방식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邊州都督府 관하 기미주와 그 바깥의 都護府 관하 기미주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었고, 그것은 '邊', '塞', '關', '國境' 등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적 경계가 곧 영토의 경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의 영토는 실질적 지배력을

---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호부 관하 기미주의 상당수는 당의 영역에 속했다고 보인다.

□ 주제어

당 태종, 기미부주, 동돌궐, 도호부, 변주

---

## I. 머리말

기미부주는 당대에 처음 창안된 제도이며 그 계기가 된 것은 태종 정관 4년(630) 3월에 일어난 동돌궐의 멸망이다. 즉 동돌궐이 멸망하자 당 조정에서는 항복한 부락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기미주의 설치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앞서 필자는 당조가 동돌궐을 멸망시키고 같은 해 순차적으로 북방에 6주를 설치하여 降胡들을 나누어 안치한 것을 가지고 기미주가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논문 A).<sup>1)</sup> 이러한 관점 자체는 기존에도 몇몇 연구자들이 언급한 것이지만, 한국 학계에서는 이와는 다른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사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 기미주의 창설은 동돌궐의 멸망을 계기로 출현하였다고 간단히 말해버리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1)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 羈糜府州 제도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43, 2018, 13~18쪽.

또 논문A에서는 기미주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邊州都督府(즉 正州) 관하의 기미주와 都護府 관하의 기미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唐律에 보이는 ‘關塞’, ‘境’, ‘國境’ 등이 두 영역을 구분하는 제도적 경계였다는 점과 관련 개념을 해석하는 데 그치고<sup>2)</sup>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 글은 논문A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먼저 당대에 기미주가 출현하기 전까지 당조가 투항한 이민족들을 어떤 방식으로 안치하였는가를 살펴본 후 기미주 창설의 의미를 서술하고, 이어 특히 도호부 관하 기미주의 제도적 경계 문제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 II. 당 초기의 ‘이민족 주현’ 설치

秦漢 이래 군현제 통치 아래에는 漢人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이민족들이 존재하였다. 그들에 대해서는 일반 군현 조직과는 조금 다른 기구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즉 진한시대에는 屬邦·屬國·道를 두고 속국에는 屬國都尉가 두어졌다. 그 외의 지역에도 東部都尉·西部都尉 등 이른바 部都尉가 두어지기도 하였다. 前漢의 속국도위·부도위는 屬國·郡守의 관할 하에 있었다.<sup>3)</sup> 다만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속방이나 속국

2)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5~11쪽.

3) 堀敏一, 「中華世界 -魏晉南北朝·隋唐時代における」, 『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日本』, 研文出版, 1998, “진·한에서는 屬邦·屬國·道를 두고 속국에 屬國都尉가 두어졌다. 그 외의 지역에도 東部都尉·西部都尉 등 이른바 部都尉가 두어지기도 하였다. 前漢의 속국도위·부도위는 郡守·郡尉의 관할 하에 있었지만, 후한에서는 속국이 郡과 동열인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68쪽).

등에도 한의 율령이 관철되었고 부도위·속국도위는 원래 治民官이 아니라 군사를 담당한 관직이었다고 한다.<sup>4)</sup>

물론 진한 및 위진남북조 시기에 속국·부도위·도에 속하지 않고 일반 군현 혹은 주현에 소속되어 태수·자사·현령의 통치를 받은 이민족도 많았다. 그 중에는 이민족의 內屬 혹은 歸屬에 따라 세워진 군현도 있었다. 따라서 당대에 이르러 이민족이 당의 관도 안에 들어 온 경우 그곳에 주현이 설치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당대에 이민족이 투항해 온 경우 주현을 설치한 것이 적지 않았다.<sup>5)</sup>

투항한 이민족으로 구성된 州는 당 초기부터 보인다. 譚其驤에 의하면, 고조 무덕 연간에 이미 幽州·營州 경내에 ㉠ 奚 부락으로 구성된 饒樂都督府 및 鮮州·崇州, ㉡ 거란 부락으로 구성된 咸州·玄州, ㉢ 말갈 부락으로 구성된 燕州·慎州가 설치되었고, 또 지금의 四川·雲南과 貴州 경내에도 이와 같은 성질의 주현이 약 30~40개가 설치되어 茂州·南寧州·姚州·黔州 등의 도독부에 나누어 예속되었다.<sup>6)</sup>

이를 바탕으로 堀敏一은 『신당서』 권43하, ‘기미주’에 기록된 기미주들 중에는 고조 무덕 시기 이래 설치된 것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 예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sup>7)</sup>

(1) 四川·西南 방면: ㉠ 무덕 원년(618)에 塗州·協州·恭州·南寧州<sup>8)</sup>

4) 김병준, 「秦漢帝國의 이민족 지배 - 一部都尉 및 屬國都尉에 대한 재검토」, 『역사학보』 217, 2013, 119~146쪽; 同, 「진한제국의 변경 이민족 지배와 부도위」, 연민수 외,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외교와 변경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3, 134~150쪽.

5) 堀敏一, 「中華世界」, 69쪽.

6) 譚其驤, 「唐代羈縻州述論」, 『長水粹編』, 河北教育出版社, 2000, 137쪽. 譚은 그 출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7) 堀敏一, 「中華世界」, 68쪽.

8)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 『역사와교육』 14, 2012, 241쪽(塗州),

등, ② 무덕 3년에 牂州, ③ 무덕 4년에 西濮州·尹州·曾州·西平州·于州<sup>9)</sup>  
 등, ④ 무덕 7년의 西寧州·南雲州·南龍州·哀州·西宗州·西利州·西豫  
 州<sup>10)</sup> 등을 설치함.

(2) 북쪽 방면: ① 무덕 초에 말갈의 涑沫·烏素固 부락으로 愼州를 두  
 고,<sup>11)</sup> ② 唐 초에 奚族의 땅에 요락도독부를 두고,<sup>12)</sup> ③ 무덕 5년에 요락도독  
 부를 나누어 鮮州·崇州를 두고,<sup>13)</sup> ④ 무덕 2년에 거란의 內稽部落으로 遼州  
 를 둠.<sup>14)</sup>

다만 이 중 牂州의 경우는 江南道에 속한다는 점<sup>15)</sup>을 확인해 둔다.

그렇다면 무덕 연간에 설치된 이들 주현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일까?  
 이들도 기미주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연구자들은 이들을 가지고 기미  
 주 제도의 창설로 보지 않는다. 譚其驥은 “그 시기에는 아직 이들 주현이  
 보통 주현과 구별되지 않았다. 태종 정관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종류의  
 주현을 대량으로 설치하면서 비로소 定制하여 기미주라고 부르고 보통  
 주현과 구별하였으며 이 보통 주현을 기미주와 구별하여 正州라고 하였  
 다”<sup>16)</sup>라고 한다. 章羣은 “정관 4년(630) 당은 내향한 돌궐을 안치하여 기

249쪽(協州, 恭州), 245쪽(南寧州) 참조. 이하, 역주를 인용한 것은 각주에 참조할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9)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 246~247쪽(髡州·尹州·曾州·盤州  
 조), 250쪽(于州).

10)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 246~247쪽(黎州 조의 西寧州, 匡州  
 조의 南雲州, 鉤州 조의 南龍州, 哀州 조, 宗州 조의 西宗州, 徽州 조의 西利州,  
 縻州 조의 西豫州).

11)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 222쪽.

12)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 219쪽(奉誠都督府 조).

13)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 219쪽(鮮州·崇州 조).

14)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 220쪽(威州 조).

15)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 252쪽.

16) 譚其驥, 『唐代羈縻州述論』, 137쪽.

미부주를 설치하였고 이후 그 일이 계속하여 있게 되었다. 이러한 州府는 도호부 혹은 연변의 도독부에 나뉘어 예속되었다”<sup>17)</sup>라고 한다. 堀敏一은 “앞에서 말한 무덕 연간에 설치된 州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지배가 미친 서남의 소수민족 지역, 아니면 북방변경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營州都督府 관하에 속한 것이다. 그것이 정관 연간에 이르러 이민족 지역의 정복이 급속하게 진행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 주현과 구별하여 특별히 기미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sup>18)</sup>라고 말한다.

劉統 역시 무덕 연간에 설치된 幽州 경내의 燕州와 黔州 경내의 夷州·思州·南州 등 몇몇 정주는 기미주의 성질을 지녔고 『括地志』 서언에 인용되어 있는 「貞觀十三年大簿」에서는 10道 358주를 열거하면서 정주와 기미주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sup>19)</sup> 정관 4년(630) 당조가 출범하여 동돌궐을 평정한 후 “朔方 지역에는 幽州에서 靈州에 걸쳐 順州·祐州·化州·長州 4주 도독부를 설치하고, 또 頡利의 영역을 6주로 나누고 왼쪽에 定襄都督府, 오른쪽에 雲中都督府를 설치하여 그 부락의 무리를 통할하게 했다”<sup>20)</sup>라고 하는 기록을 들어 당조가 기미부주를 정식으로

17) 章羣, 「從屬國到羈縻州府」, 『唐代蕃將研究(續篇)』, 聯經, 1990, 24쪽.

18) 堀敏一, 「中華世界」, 69쪽. 또 同, 『東アジア世界の歴史』, 講談社, 2008에서도 “... 격렬한 논란 끝에 그들을 북방 변경의 內外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 도독부와 주를 설치하였으며 …… 이러한 이민족 통치 방법은 그 후 당에 복속한 변경의 이민족을 대상으로 널리 시행되게 되었고 특별히 기미주라고 부르게 되었다”(252~253쪽)라고 한다.

19) 劉統 저, 정병준·채지혜·유승철 역, 「당대 기미부주 연구(1)」, 『신라사학보』 23, 2011, 647~648쪽, 659~661쪽, 670쪽. 여기서 劉는 “당대 기미주의 설치 태종 정관 4년에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다. 고조 무덕 연간에 이미 설치되기 시작했다. … 당시에는 기미주와 正州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없었다”라고도 한다.

20) 『구당서』 권194상, 突利可汗傳, “… 又分頡利之地六州, 左置定襄都督府, 右置雲中都督府, 以統其部衆”(中華書局, 5163쪽).

설치한 첫 기록이라고 하였다.<sup>21)</sup> 나아가 劉는 “이상을 종합하면 당조가 기미부주를 창설할 때는 통일된 제도가 없었다. 정주와 기미주 사이에는 아직 명백한 구별이 없었고, 기미부주의 설치와 예측은 그때그때 해당 지역의 상황과 정책에 따라 행해졌던 것이다. 따라서 정관 4년에 설치된 기미부주는 공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필시 하나의 단서를 열었다. 정관 말년에 대거 기미주를 설치하면서 그 행정 관리제도도 점차 모습을 완비해 갔다”<sup>22)</sup>라고도 한다. 말하자면 정관 4년(630)의 기미주는 아직 제도적 불안정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동돌궐이 멸망한 630년 3월 이전의 정관 연간에 이민족을 안치한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 『자치통감』 권193, 정관 3년(629) 윤12월 정미일 조에 의하면,

東謝 주장 謝元深과 南謝 주장 謝彊이 내조하였다. 諸謝는 모두 南蠻別種으로 黔州의 서쪽에 살았다. 詔를 내려 東謝를 應州로 삼고 南謝를 莊州로 삼아 黔州都督에 예속시켰다(中華書局, 6067~6068쪽).

라고 하고 이어서 “이때 遠方의 諸國으로 조공을 온 자가 매우 많았다”라고 한다. 여기서 應州와 莊州는 『신당서』 권43하, ‘기미주’에도 보이는데, 즉 전자는 “정관 3년 東謝 수령 謝元深의 땅에 설치하였다. 都尙 · 婆覽 · 應江 · 陁隆 · 羅恭 5현이 있었다”<sup>23)</sup>고 하고, 후자는 “본래 南壽州였고 정관 3년(629) 南謝蠻 수령 謝彊의 땅에 설치하였다”<sup>24)</sup>라고 한다.

또, 같은 책의 같은 달 을축일 조를 보면,

21) 劉統, 『당대 기미부주 연구(1)』, 661쪽.

22) 劉統, 『당대 기미부주 연구(1)』, 670쪽.

23)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 254쪽.

24)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 253쪽.

牂柯 추장 謝能羽 및 充州蠻이 입조하자 조서를 내려 牂柯를 牂州로 삼고, 党項 추장 細封步賴가 내항하자 그 땅을 軌州로 삼고, 각각 그 추장을 자사로 삼았다. 당항 땅은 3천리에 걸쳐 있었고 姓 별로 部가 되어 서로 통일되지 않았는데, 細封氏 · 費聽氏 · 往利氏 · 頗超氏 · 野辭氏 · 旁當氏 · 米擒氏 · 拓拔氏가 모두 大姓이었다. 세봉보뢰가 唐으로부터 예우를 받자 나머지 部가 계속하여 내항하였고, 그 땅을 岷 · 奉 · 巖 · 遠 4주로 삼았다(6068쪽).

라고 하고, 이어서 “이 해에 戶部가 상주하길 중국인이 塞外에서 돌아오거나 四夷가 전후로 降附한 자가 남녀 120여만 口라고 하였다”(6069쪽)라고 한다. 이 중 牂州도 기미주로서 江南道에 속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軌州는 기미 도독부로서 “정관 2년(628) 細封步賴部로 설치하였고 玉成, 金原, 俄徹, 通川 4현이 있었다”<sup>25)</sup>고 한다. 또 岷 · 奉 · 巖 · 遠 4주 역시 『신당서』 권43하, ‘기미주’에는 설치 연대가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지만, 모두 기미주라고 하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록 가운데 “각각 그 추장을 자사로 삼았다”고 하는 구절은 사실상 기미주와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직 정주와 구별하여 기미주로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것이다. 기미주라는 명칭 및 제도가 새롭게 출현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 짐작된다.

25)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糜州’ 역주, 230쪽.



### III. 동돌궐의 멸망과 기미부주 창설

기미주 제도는 어떤 연유로 생겨난 것일까? 기미주가 출현한 시기의 전후 상황에 대해 『신당서』 권43하, 지리지, ‘기미주’의 머리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당이 건국된 초기에는 四夷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태종이 돌궐을 평정한 뒤 西北諸蕃 및 蠻夷가 조금씩 內屬하자, 그 部落 별로 주현을 나누어 설치[列置]하였다. 그 큰 것은 도독부로 삼고 그 수령을 도독·자사에 임명하여 모두 세습하게 하였다. 비록 貢賦와 版籍은 대부분 호부에 올리지 않았으나, 교화[聲教]가 미치는 곳은 모두 邊州都督과 都護가 다스렸으며, 속세에 규정되었다(中華書局, 1119쪽).

여기서 “태종이 돌궐을 평정한 뒤 西北諸蕃 및 蠻夷가 조금씩 內屬하자, 그 部落 별로 주현을 나누어 설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 堀敏一은 태종이 동돌궐을 멸망시켜 힐리가한을 사로잡은 정관 4년(630) 경에서 기미주의 기원을 찾은 것이라고 한다.<sup>26)</sup> 말하자면 堀은 무엇보다도 『신당서』 권43하, 지리지, ‘기미주’의 기사를 근거로 630년에 기미주가 창설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때 유의하고 싶은 것은 동돌궐 멸망의 배경이다. 정관 원년(627)부터 동돌궐은 내부적으로 크게 붕괴하기 시작하였다.<sup>27)</sup> 즉 같은 해 몽골 고원에 있던 鐵勒 부락의 薛延陀·廻紇·拔也古<sup>28)</sup> 등이 연이어 반란을

26) 堀敏一, 『中華世界』, 68쪽.

27) 김호동,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역사학보』 137, 1993, 133쪽.

28) 『신당서』 권215상, 突厥傳上, 정관 원년 조, 6034쪽과 뒤이어 인용할 『자치통감』

일으켜 힐리가한의 아들인 欲谷設을 공격하여 패주시켰다. 힐리가 조카인 突利可汗을 보내 토벌하게 했으나 다시 패하였다. 이런 가운데 큰 눈이 와서 쌓인 눈이 몇 척이나 되니 양과 말이 모두 죽고 사람들이 크게 굶주리게 되었다.<sup>29)</sup> 그러자 정관 3년(629) 9월 동돌궐의 俟斤 9인이 3천을 이끌고 당에 내항하고 같은 달 拔野古·僕骨·同羅·奚의 추장이 무리를 이끌고 내항하였다.<sup>30)</sup>

같은 해(629) 11월 태종은 李世勣·李靖 등에게 10여 만을 이끌고 동돌궐을 공격하게 하였다.<sup>31)</sup> 그런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돌리가한이 入朝해 왔고 또 돌궐의 郁射設이 부락을 이끌고 내항하였다.<sup>32)</sup> 이듬해(630) 2월 이정이 힐리를 陰山에서 격파하자 그 대추장들이 모두 무리를 이끌고 항복해 왔다.<sup>33)</sup> 이어 3월 “四夷君長이 궁궐로 와서 황제에게 天可汗이 되길 청하자” 태종이 수락하였고 곧이어 동돌궐의 思結俟斤이 무리 4만을 이끌고 내항하였다.<sup>34)</sup> 같은 달 힐리가 종질인 阿史那蘇尼失에게 달아나니<sup>35)</sup> 당군의 張寶相이 힐리를 사로잡으면서 마침내 동돌궐은 멸망하였고 소니실도 당에 항복하였다.<sup>36)</sup>

---

등에서는 拔野古라고 보인다.

- 29) 『구당서』 권194상, 돌궐전상, 5158쪽(동북아역사재단 편, 『구당서 외국전 역주』 상, 동북아역사재단, 2011, 59~60쪽) 등.
- 30) 『자치통감』 권193, 정관 3년 9월 조, 6066쪽.
- 31) 『자치통감』 권193, 정관 3년 11월 조, 6066쪽.
- 32) 『자치통감』 권193, 정관 3년 12월 조, 6067쪽.
- 33) 『자치통감』 권193, 정관 4년 2월 조, 6072~6073쪽.
- 34) 『자치통감』 권193, 정관 4년 3월 조, 6073쪽.
- 35) 『구당서』 권194상, 돌궐전상, “(2월) 頡利乘千里馬, 獨騎奔于從姪沙鉢羅部落”(5159쪽); 『자치통감』 권193, 정관 4년 3월 조, “頡利以數騎夜走, 匿于荒谷”(6074쪽).
- 36) 『자치통감』 권193, 정관 4년 3월 조, “蘇尼失懼, 馳追獲之(즉 힐리). 庚辰, 行軍副總管張寶相帥衆奄至沙鉢羅營, 俘頡利送京師, 蘇尼失舉衆內降”(6074쪽); 『신당서』 권215상, 돌궐전상, “張寶相禽之(즉 힐리). 沙鉢羅設蘇尼失以衆降, 其國遂

힐리가 사로잡히기 전에 동돌궐은 이미 거의 四散된 상태나 다름없었고 돌궐이 망하자 그 부락은 “혹 북으로 설연타에게 귀부하고 혹 서역으로 도주하였으나 당에 투항한 자가 그래도 10만 口”<sup>37)</sup>라고 하고, 힐리가 사로잡히면서 “漠南의 땅은 마침내 공허하게 되었다”<sup>38)</sup>라고 한다.

약 10만이라고 하는 ‘突厥降胡’는 당군과 교전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내항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수령들 휘하에 고유한 부족적인 구조도 상당 부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당조로서도 그들을 일반적인 전쟁포로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힘들었고 그들 수령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마련해야 했을 것이다.<sup>39)</sup>

앞 장에서 기미주 제도의 창설에 대해 堀敏一이 “정관 연간에 이르러 이민족 지역의 정복이 급속하게 진행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 주현과 구별하여 특별히 기미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한 견해를 소개하였다. 즉 동돌궐이 멸망하는 과정에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 기미주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堀의 견해를 조금 더 보면 “당은 돌궐의 힐리가한을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돌궐에는 가한이 없게 되었다. 종래에 중국이 이민족을 지배할 때에는 이민족의 군주를 온존시켜 중국 황제와 군주 사이에 君臣關係를 맺고(군주의 책봉을 말함), 군주를 통해 이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돌궐의 경우는 책봉할 군주가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논란 끝에 돌궐의 옛 지배지역에 주현을 두고 돌궐의 각급 지도자

亡, 復定壤·恆安地, 斥境至大漠矣”(6035쪽).

37) 『자치통감』 권193, 정관 4년 4월 조, 6075쪽. 『구당서』 권194상, 돌궐전상에서는 “頡利之敗也, 其部落或走薛延陀, 或走西域, 而內降者甚衆”(5162쪽)라고 한다.

38) 『자치통감』 권193, 정관 4년 3월 조, 6074쪽.

39) 김호동,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游牧民族의 對應」, 134쪽. 『구당서』 권194상, 돌궐전상, “其酋長至者皆拜爲將軍·中郎將等官, 布列朝廷, 五品以上百餘人, 因而入居長安者數千家”(5163쪽).

를 주의 도독·자사·현령에 임명하고 이를 內地의 주현과 구별하여 ‘기미주’라고 불렀다”<sup>40)</sup>라고 하고, 또 “당이 힐리가한을 포로로 삼은 결과, 통제를 잃은 돌궐 유민은 일부가 설연타와 서돌궐로 달아난 외에 대부분은 당으로 투항하였다. 여기에는 종래와 같이 군주를 책봉할 조건은 없다. 그래서 논란의 결과 降戶를 北方邊境의 내외에 두고 변경 안에 順·佑·化·長 등의 4주를, 변경 밖의 내몽골에 定壤都督府·雲中都督府 아래의 6주를 두었다. …… 石見淸裕에 의하면 정관 7·8년에 이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sup>41)</sup>라고도 한다.

이로 보면 동돌궐의 힐리가 사로잡히면서 가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미주를 창설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당의 입장에서 가한을 존치시키려고 하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가한의 폐지는 당의 의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힐리의 從叔인 李思摩<sup>42)</sup>를 돌궐가한으로 책립한 사실이다. 즉 정관 13년(639) 4월 돌리가한의 동생인 結思率이 40여 명을 이끌고 태종이 머물던 九成宮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sup>43)</sup> 같은 해 7월 이사마를 乙彌泥執侯利苾可汗으로 세워 “諸州에 안치된 돌궐 및 胡에게 모두 황하를 건너 그 舊部로 돌아가 대대로 藩屏이 되어 영구히 邊塞를 지키게 하였다”<sup>44)</sup>고 한다. 이에 대해 堀敏一은 “기미주 체제 안에

40) 堀敏一, 『中國通史』, 講談社, 2000, 203~204쪽.

41) 堀敏一, 『中華世界』, 70쪽.

42) 『구당서』 권194상, 돌궐전상, 思摩 조, “頡利族人也. 始畢·處羅以其貌似胡人, 不類突厥, 疑非阿史那族類, ……”(5163쪽); 『신당서』 권215상, 돌궐전상, 思摩 조, “頡利族人, 父曰咄六設”(6039쪽); 『자치통감』 권191, 무덕 7년(624) 8월 조, “思摩, 頡利之從叔也”(5993쪽).

43) 『구당서』 권3, 태종본기하, 정관 13년 4월 조, “戊寅, 幸九成宮. 甲申, 阿史那結社爾犯御營, 伏誅”(50쪽); 『자치통감』 권195, 정관 13년 4월 조, “[結社率]遂犯行宮, 踰四重幕, 弓矢亂發, 衛士死者數十人. …… 北走, 渡渭, 欲奔其部落, 追獲, 斬之”(6147쪽).

일부 돌궐의 옛 통치 체제를 부활시키려는 방안이다”<sup>45)</sup> 혹은 “아사나사마를 가한으로 삼아 옛 통치체제를 일부 부활시켰다”<sup>46)</sup>라고 한다. 기미주와 가한 체제를 혼용하였다는 것이지만, 이사마의 가한 책립은 당조의 정책에 따라 통치방식이 다양하게 채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堀이 “정관 연간에 이르러 이민족 지역의 정복이 급속하게 진행되게 되었기 때문에”라고 한 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돌궐사를 연구한 정재훈은 당 태종이 동돌궐의 분열을 유도하였다고 하면서도 동돌궐의 멸망은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상황”, “돌궐의 갑작스러운 붕괴”,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며 심지어 “태종은 예상 밖의 상황에 대응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까지 말한다.<sup>47)</sup>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면 동돌궐이 예상을 뛰어넘어 급속하게 멸망하자 치열한 논란을 거쳐 급히 기미주를 고안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譚其驤은 기미주 제도의 창설과 관련하여 “태종 정관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종류의 주현을 대량으로 설치하면서 비로소 定制하여 기미주라고 부르고”라고 하였다. 즉 이민족 주현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기미주라는 특별한 주현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경 안에 順·佑·化·長 등의 4주를, 변경 밖에 두 도독부와 6주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보면 주현 자체가 반드시 대량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44) 『자치통감』 권195, 정관 13년 7월 조, 6148쪽. 『구당서』 권194상, 돌궐전상, “自結社率之反也, 太宗始患之. 又上書者多云處突厥於中國, 殊謂非便, 乃徙於河北, 立右武侯大將軍·化州都督懷化郡王思摩爲乙彌泥孰俟利苾可汗, 賜姓李氏, 率所部 建牙於河北”(5163쪽).

45) 호리 도시카즈 저, 정병준 등 역,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 중화적 세계와 여러 민족들』,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264쪽.

46) 堀敏一, 『中華世界』, 70쪽.

47) 정재훈, 『돌궐 유목제국사』, 사계절, 2016, 318~331쪽, 352~353쪽.

하지만 대량의 돌궐 유민이 투항해 온 것만은 분명하다. 이로 보면 대량의 돌궐 유민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진 것이 기미주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앞 장에서 살펴본 대로 정관 3년(629) 윤12월에 肅州와 軌州를 설치하고 “각각 그 추장을 자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동돌궐 유민에 대해 설치한 기미주가 전혀 새로운 형식은 아니다. 하지만 肅州·軌州 등은 비록 추장이 자사에 임명되었다고는 해도 정주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즉 부여를 비롯한 제반 관리 제도가 정주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동일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미주가 창설된 시기 혹은 이후 어느 시점에 이들 州도 기미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은 돌궐항호를 대상으로 한 4주 혹은 6주의 성격에 대한 김호동의 견해이다. 그는 이들 주를 정주로 간주하여 당이 ‘내민화’의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았다.<sup>48)</sup> 이들을 정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sup>49)</sup> 당 초에 설치된 ‘이민족 주현’을 내민화 정책으로 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기미주 제도의 창설은 그러한 내민화 정책을 전환하여 형식적으로는 이민족들을 ‘내민’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부락에 따른 자치를 허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미주의 설치에 대해 堀敏一은 “이민족 사회를 온존시키고 통치하는 이른바 기미의 전통에 따른 것이지만, 도독부와 주현을 설치함으로써 일단 관료제적인 체제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러한 체제를 기미주라고 불렀던 것이다”,<sup>50)</sup> “이전의 책봉의 경우와는 달리 주·현의 장관이 임명되어 중앙의 명령을 관료제를 통해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민족 사회가 온존되고 주현의 수장에는 이민족 사회의 지도자가 임명

48) 김호동,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142쪽.

49)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17~18쪽.

50) 호리 도시카즈,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263쪽.

되어 중국의 이민족 지배 원칙인 기미의 전통을 잇고 있다. 따라서 관료제 지배가 어느 정도 철저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도호부가 설치되어 ……”<sup>51)</sup>라고 한다. 말하자면 이른바 ‘내민화’ 정책보다는 약한 것이라고 해도 책립에 비해서는 당의 지배력이 미쳤다는 것이다.<sup>52)</sup> 기미주의 설치는 전통적 이민족 관리 정책의 일대 전환이라 해도 좋다고 생각된다.

#### IV. 도호부의 설치와 제도적 경계

당 태종은 정관 20년(646) 설연타를 멸망시키고 이듬해 그 지배하에 있던 鐵勒諸部에까지 기미주를 설치하였다. 즉 『자치통감』 권198, 정관 21년(647) 정월 조에 의하면,

回紇部를 瀚海府, 僕骨을 金微府, 多濫葛을 燕然府, 拔野古를 幽陵府, 同羅를 龜林府, 思結을 盧山府로 삼고, 渾을 皋蘭州, 斛薛을 高闕州, 奚結을 雞鹿州, 阿跌을 雞田州, 契苾을 榆溪州, 思結別部를 蹕林州, 白靺을 眞顔州로 삼았다. 각각 그 추장을 도독과 자사로 삼으니 …… 이에 北荒이 모두 평정되었다(6244~6245쪽).

라고 하고, 같은 해 4월에는 西受降城 동북 40리에 燕然都護府를 설치하

51) 堀敏一, 『中國通史』, 205~206쪽.

52) 堀敏一, 『中華世界』, “諸國 군주의 일원적인 지배가 인정된 冊封과는 달리 중국 정부의 관료제에 의한 지휘·명령체통이 이민족 사회의 내부에 들어가고 君長の 지배는 분단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66쪽).

여 한해 등 6도독부와 고란 등 7주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신당서』 권43하, ‘기미주’에 보이는 당의 기미주 지배방식은 거의 완성되었다.<sup>53)</sup>

아울러 정관 23년(649)에는 돌궐도 定壤·雲中 두 도독부 아래의 11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고종 용삭 3년(663)에 운중도호부를 두어 돌궐을 다스리고 연연도호부를 瀚海都護府로 개칭하여 주로 철륵제부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뒤에 전자를 單于都護府, 후자를 安北都護府로 개칭하였다.<sup>54)</sup>

Ⅲ장에서 堀敏一은 기미주에 관료제 지배가 어느 정도 철저하였는지의 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도호부가 설치되었다고 한 것을 인용하였는데, 나아가 그는 “당의 경우는 종래 중국 왕조의 직할 영토 안이 아니라 기미의 대상이었던 광범위한 이민족 지역에 주현제를 설치해 간간 것에 특징이 있다”<sup>55)</sup>고 한다. 말하자면 머리말에서 말한 邊州都督府 안의 기미주보다 그 바깥의 도호부 관하 기미주의 설치가 (세계제국적인) 당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sup>56)</sup>

필자는 논문 A에서 正州와 같은 정식 통치기구 바깥에 존재하는 이민족 지역은 왕조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영역 문제를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도호부 관하 기미부주의 상당수는 당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하였다.<sup>57)</sup>

영역에 관한 견해들을 더 살펴보자. 먼저 堀敏一은 앞에서 언급한대

53)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20~24쪽.

54) 堀敏一, 「中華世界」, 70쪽.

55) 堀敏一, 「中華世界」, 69쪽.

56)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24쪽.

57)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38~39쪽.



로 “降戶를 北方邊境의 내외에 두고 변경 안에 順·佑·化·長 등의 4주를, 변경 밖의 내몽골에 定壤都督府·雲中都督府 아래의 6주를 두었다”라고 한 것 외에 또 “정관 13년에 변경 안의 유민을 밖으로 옮기고 아사나사마를 가한으로 삼아 옛 통치체제를 일부 부활시켰다”<sup>58)</sup>라고 한다. 즉 正州인 ‘邊州’의 바깥 경계를 기준으로 그 안쪽을 변경이라 말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기미주의 장관은 당 정부의 명령계통으로 들어가 변경에 두어진 도호부 등의 감독을 받았다”<sup>59)</sup>라고 하여 도호부 관하 기미주까지 변경, 즉 영토에 포함된 것으로 말한다. 단 이에 이어서 堀은 “이 점에서 漢代 이래의 이민족 통치보다 중국 정부의 힘이 강력하게 미치게 된 것이지만, 반면 이민족의 수장에게 통치를 맡기는 기미정책의 전통을 이어 장관의 세습이 허용되고 그 戶籍은 대부분 중앙의 戶部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세금은 있었지만, 지방의 특산물 등이 많았던 듯하다”라고 하여 그 지배 형태는 매우 느슨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堀은 ‘변경’의 의미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도호부 지역까지 당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라면 “변경 안에 順·佑·化·長 등의 4주를 [설치하고]”, “정관 13년에 변경 안의 유민을 밖으로 옮기고”라고 할 때의 ‘변경’은 『唐律疏議』 등에서 말하는 ‘邊’, ‘塞’, ‘關’, ‘關塞’, ‘境’, ‘國境’과 같은 의미 즉 ‘변주’의 바깥 경계까지를 가리키는데, 이때의 ‘邊’, ‘塞’, ‘關’ 등은 華와 夷 혹은 化內와 化外를 나누는 기준이었다.<sup>60)</sup>

李大龍에 의하면 당의 세계관념은 ① 九州(중국), ② 海內(四夷 지역), ③ 海外(塞外)로 이루어졌고, 또 이에 대응하여 ① 府州 통치구역(직접 통치), ② 都護府 또는 邊防都督府가 관할하는 기미부주 지역, ③ 藩

58) 堀敏一, 『中華世界』, 70쪽.

59) 堀敏一, 『東アジア世界の歴史』, 253~254쪽.

60)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5~11쪽, 42쪽.

國 구역(책봉 구역, 통치기구를 두지 않음)이라는 통치 구분이 설정되었다고 한다.<sup>61)</sup> 그러면서 신라·백제·고구려·토번 등은 처음에 변국 구역에 포함되었고, 그 중 신라와 발해는 다시 기미부주 지역에도 포함되었다고 말한다.<sup>62)</sup> 하지만 ㉔ 塞를 도호부의 바깥 경계로 보는 점, ㉕ 신라·발해를 일반적 기미주에 속한다고 보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중 ㉕와 관련해서는 논문A에서 신라·발해에 설치된 기미주는 일반적 기미주와는 다른 형태의 기미주라는 점을 밝혔다.<sup>63)</sup>

渡邊信一郎은 당의 제국적 질서 개념을 정리하여 ① 주현: 貢賦(즉 調庸物과 貢獻物)와 版籍(즉 지도와 호적)을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납입하는 內地 지역, ② 기미부주: 왕조에 복속된 蕃夷가 공부와 판적을 비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그 장관을 세습하는 지역, ③ 遠夷(入蕃): 공헌물만을 비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공납하는 지역으로 나눈 후, 그 바깥을 絕域이라고 하였다.<sup>64)</sup> 그러면서 신라와 일본은 ‘원이’ 지역에 포함된다고 한다. 渡邊은 기미부주를 변주와 도호부의 그것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양자는 공부와 판적의 관리에 엄연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荒川正晴도 당의 제국적 질서를 삼중구조로 나누어 ① 내지 도독부·주, ② 기미 도독부·주, ③ 遠夷(入蕃)로 분류한 후, 조공무역을 행한 조공국은 통상 ‘遠夷’ 즉 蕃國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소그디아나의 오아시스 나라 등과 같이 기미부주의 측면과 조공국의 측면을 동시에 지닌 나라들이 있다고도 한다.<sup>65)</sup> 荒川の 기미부주에 관한 견해는 기본적

61)李大龍, 『漢唐藩屬體制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281~290쪽.

62)李大龍, 『漢唐藩屬體制研究』, 377~378쪽, 390~425쪽; 정병준, 「唐·新羅 交流史에서 본 新羅求法僧」, 『중국사연구』 75, 2011, 62~63쪽.

63)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29~32쪽.

64) 와타나베 신이치로 저, 문정희·임대희 역, 『天空의 玉座』, 신서원, 2002, 204~206쪽; 渡邊信一郎, 「唐代前期律令制下の財政的物流と帝國編成」,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汲古書院, 2010, 427쪽.

으로 渡邊과 동일하다.

동시에 荒川은 “소그드 상인이 당이 들어선 이후 당 內地로 入境하여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전개한 것은 이러한 당에 의한 기미부주 설치 이후의 일이다”,<sup>66)</sup> “외래 소그드 상인의 입경 시에는 이른바 입국심사라는 것은 전혀 필요 없이 過所를 취득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당 내지로 입경하였다”<sup>67)</sup>라고 한다. 여기서 입경이라는 것은 당 내지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당률소의』 등에 보이는 ‘邊’, ‘塞’, ‘關’, ‘境’ 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堀敏一과 荒川正晴은 어쩌면 ‘변주’와 도호부 사이를 당의 경계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변경 혹은 입경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현대적 영토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두 사람은 해당 용어를 단순히 정주인 변주와 그 바깥 사이의 경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기미주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이민족 주현’이 여전히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堀敏一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예로 ㉠ 무덕 원년 수대에 투항한 粟末靺鞨 사람으로 설치한 燕州, ㉡ 무덕 2년 巴蜀境외의 蠻夷 지구에 설치된 義州, ㉢ 乾封 2년(667) 獠族을 초치하여 옛 桂林 땅에 두어진 嚴州, ㉣ 調露 원년(679) “靈·夏南境에 降突厥로 魯州·麗州·含州·塞州·依州·契州를 두고 唐人을 자사로 삼았다”<sup>68)</sup>고 하는 六胡州를 들고 있다.<sup>69)</sup> 실제로 이들 주는 기미주를

65) 荒川正晴, 「唐帝國と胡漢の商人」, 『ユーラシアの交通・交易と唐帝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346쪽.

66) 荒川正晴, 「唐帝國と胡漢の商人」, 341~342쪽.

67) 荒川正晴, 「唐帝國と胡漢の商人」, 359쪽.

68) 『신당서』 권37, 지리지1, 關內道, 朔郡 조, “上, 調露元年, 於靈·夏南境以降突厥置魯州·麗州·含州·塞州·依州·契州, 以唐人爲刺史, 謂之六胡州”(974~975쪽).

망라하고 있는 『신당서』 권43하, ‘기미주’에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단 6호주는 이때(679) 기미주에서 정주로 전화된 것이며 이후 다시 기미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sup>70)</sup> 그리고 6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唐人을 자사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주의 구성원이 이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으로 보면 당 초기에 각각의 추장을 자사 등으로 삼았던 ‘이민족 주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州의 존재는 기미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민족의 ‘내민화’ 정책이 병행되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민화 정책은 그 규모로 볼 때 기미주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 V. 맺음말

당 초기에 이민족이 투항해 오면 ‘이민족 주현’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는데, 이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즉 秦漢 이래 군현제 아래에는 漢人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민족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민족 주현’ 중에는 각 추장을 자사로 삼은 경우도 있었지만, 부역을 비롯한 제반 제도가 정주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동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미주가 창설된 시기 혹은 이후 어느 시점에 그 대부분은 기미주로 전화되었다.

69) 堀敏一, 『中華世界』, 69쪽.

70) 劉統, 『羈縻府州與正州間的轉化』, 『唐代羈縻府州研究』, 西北大學出版社, 1998, 63~70쪽. 그리고 기타 기미주와 정주 간의 전환에 관해서는 左之濤, 『從維州的沿革看唐代羈縻州與正州的轉換』, 『魯東大學學報』 2006-1 등 참조. 또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의 각주 117)과 167)에 관련 사료가 있다

기미주가 창설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즉 630년 동돌궐이 멸망하면서 약 10만이라는 대량의 유민이 발생하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책으로 특별하게 기미주 제도가 고안되었던 것이다. 이 제도의 창설은 이전의 ‘內民化’ 정책을 바꾸어 형식적으로는 ‘내민’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부락에 따른 자치를 허용한 것을 말한다. 기미주 제도의 성격에 대해 堀敏一은 “諸國 군주의 일원적인 지배가 인정된 冊封과는 달리 중국 정부의 관료제에 의한 지휘·명령계통이 이민족 사회의 내부에 들어가고 君長의 지배는 분단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한다. 이 제도의 출현은 전통적 이민족 관리 방식의 일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당 태종은 정관 20년(646) 설연타를 멸망시키고 이듬해 그 지배하에 있던 鐵勒諸部에까지 기미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燕然都護府를 설치하여 이들을 관할하게 하면서 당의 기미주 제도는 거의 완성되었다. 邊州 관하의 기미주와 도호부 관하의 기미주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었고, 그것은 ‘邊’, ‘塞’, ‘關’, ‘國境’ 등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적 경계가 곧 당의 영토를 구분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당의 영토는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호부 관하 기미주의 상당수는 당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8.10.30 투고 / 2018.11.26 심사완료 / 2018.11.26 게재확정)

[Abstract]

The Emergence of the Jimifuzhou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Border in the Early Tang Dynasty

Cheong, Byung-jun

The early Tang dynasty managed foreign tribes who surrendered to Tang by establishing the Zhou-xian (州縣) district system. In some cases, the chief of each tribe was appointed to the minister of the newly established district that represents his tribe. These districts appear basically identical to the ordinary Zhou system despite their differences to some degrees.

The Jimifuzhou system was devised to manage a large number of refugees occurred due to the fall of the East Turks at 630 C.E. The establishment of this system brought a remarkable transformation to Tang's traditional policy for managing foreign tribes as it was distinguished from the former policy that assimilated them into the general (native) citizen of Tang.

There were clear boundaries between the jimi(fu)zhou districts governed by Frontier's Government-generals and the ones by Protectorate-generals, which were placed outside the districts in charge of the Frontier's Government-general. Those boundaries, referred to as bian(邊), sai(塞), guan(關), guojing(國境), and so on, were institutional; nevertheless, they did not indicate territorial borders. Territories of Tang should be understood by measure of the actual control-

ling power, and in that light,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jimifuzhou districts under the control of the Protectorate-generals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belonged to the domain of Tang.

□ Keyword

Tang Tai-zong, Jimifuzhou, East Turks, Protectorate-General, Frontier's Government-general

[참고문헌]

1. 사료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동북아역사재단 편, 『구당서 외국전 역주』 상, 동북아역사재단, 2011.

2. 논저

김병준, 「秦漢帝國의 이민족 지배 -一部都尉 및 屬國都尉에 대한 재검토」,

『역사학보』 217, 2013.

김병준, 「진한제국의 변경 이민족 지배와 부도위」, 연민수 외,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외교와 변경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3, 134~150쪽.

김호동,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역사학보』 137, 1993.

정병준, 「唐·新羅 交流史에서 본 新羅求法僧」, 『중국사연구』 75, 2011.

정병준, 「『신당서』 권43하, ‘羈縻州’ 역주」, 『역사와교육』 14, 2012.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羈縻府州 제도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43, 2018.

정재훈, 『돌궐 유목제국사』, 사계절, 2016.

譚其驤, 「唐代羈縻州述論」, 『長水粹編』, 河北教育出版社, 2000(원래는 1990).

劉統 저, 정병준·채지혜·유승철 역, 「당대 기미부주 연구(1)」, 『신라사학보』 23, 2011(원래는 1998).

劉統, 『唐代羈縻府州研究』, 西北大學出版社, 1998.

李大龍, 『漢唐藩屬體制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 章羣, 「從屬國到羈縻州府」, 『唐代蕃將研究(續篇)』, 聯經, 1990.
- 左之濤, 「從維州的沿革看唐代羈縻州與正州的轉換」, 『魯東大學學報』  
2006-1.
- 堀敏一 著, 정병준 · 이원석 · 채지혜 역,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  
중화적 세계와 여러 민족들』,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원래 1993).
- 堀敏一, 「中華世界 -魏晉南北朝·隋唐時代における」, 『東アジアのなか  
の古代日本』, 研文出版, 1998(원래는 1997).
- 堀敏一, 『中國通史』, 講談社, 2000.
- 堀敏一, 『東アジア世界の歴史』, 講談社, 2008.
- 渡邊信一郎, 「唐代前期律令制下の財政的物流と帝國編成」, 『中國古代の  
財政と國家』, 汲古書院, 2010.
- 渡邊信一郎 著, 문정희 · 임대희 역, 『天空의 玉座』, 신서원, 2002(원래는  
1996).
- 荒川正晴, 「唐帝國と胡漢の商人」, 『ユーラシアの交通·交易と唐帝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